

입학사정관실 운영규정

제정 2012. 9. 1., 명칭변경 2022. 4.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8조의 2에 의거 호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를 평가하거나 입학시험 등 전형에 관련된 업무에 참여할 입학사정관의 임용, 위촉 및 입학사정관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23)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1.)

1.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대학이 건학이념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학업수행 능력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교육환경, 학습과정, 소질·적성, 인성, 창의성 및 성장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입학사정관”이란 대학과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생의 학업능력과 잠재력, 소질, 개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입시 전문가로서, 대입전형연구개발, 전형자료심사평가, 선발된 학생의 적응 지원 등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전임입학사정관”이라 함은 채용입학사정관, 교수입학사정관, 전환입학사정관을 말한다.
4. “위촉입학사정관”이라 함은 내부위촉교수사정관 및 외부위촉입학사정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직급)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실을 둔다.
2. 입학사정관실에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실장을 두며, 실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3. 실장은 입학사정관실을 대표하며, 입학사정관실 운영과 시설관리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4. 전임입학사정관은 업무능력, 업무실적 및 기여도에 따라 그 직급을 일반, 선임, 수석으로 구분하고 해당 직급별 급여 및 성과급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5. 입학사정관 실장을 보조하고 입학사정관들의 업무분장과 지시사항의 수합, 조정을 위하여 팀장을 둔다.

제4조(임용 및 위촉) 입학사정관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임용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2. 23)

1. 채용입학사정관 : 입학사정관의 채용은 학력, 경력, 근무성적 및 기타 능력의 평가에 의하여 행하고 본교 교원인사규정 및 직원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따라 임용함.
2. 교수입학사정관 : 본교 교원 중에서 입학사정관실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함.
3. 전환입학사정관 : 본교 직원 중에서 입학사정관실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함.
4. 위촉입학사정관 : 내부위촉교수사정관은 본교 교원 중에서, 외부위촉입학사정관은 외부 저명인사 중에서 입학사정관실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함.

제5조(직무) 입학사정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4. 1.)

1. 학생부종합전형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지침 개발
2. 평가기준과 평가자료에 근거한 학생선발
3. 고교 정보수집 및 분석
4. 학생부종합전형 홍보 및 상담
5. 입시 및 전형결과 분석
6.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7. 고교대학 연계에 관한 업무
8.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연구
9. 학생부종합전형 선발학생 사후 관리

10. 그 밖의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된 업무

제6조(활동 및 교육) 입학사정관이 전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별첨 1의 입학사정관 윤리강령에 따라 활동한다.

제7조(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거 입학사정관전형의 선발 및 운영을 위하여 입학사정관전형위원회를 둔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개정 2022. 4. 1.)

호서대학교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본 윤리강령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호서대학교가 본교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전형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신뢰로운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학차원의 책무성을 규정하고, 입학사정관의 기본 윤리를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1. 대학의 책무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호서대학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 구성 및 학생 선발

- 하나, 대학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과정에서 학습·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대입전형을 구성한다.
- 하나, 대학은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를 평가하여 선발하며,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고자 노력한다.
- 하나, 대학은 전형의 지원자격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이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 정보의 제공

- 하나, 대학은 전형의 구체적인 내용(전형취지, 지원자격, 평가기준, 평가방법, 제출서류 등)을 대학별 전형시행계획, 모집요강 및 전형 안내자료 등에 제시하고, 그 내용을 준수한다.
- 하나, 대학은 해당 대학의 전형 운영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학별 설명회, 대입 정보포털(adiga)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 공정성 및 신뢰성

- 하나,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선발할 인재상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대입전형의 타당성을 제고한다.
- 하나, 대학은 전형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다.
- 하나,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다단계에 걸쳐 지원자의 서류를 평가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 하나, 대학은 평가기준 및 전형결과를 공개하여 전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 전문성 확보

- 하나, 대학은 전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입학사정관 확보 및 신분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대학은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입학사정관의 책무

입학사정관은 대입전형에 대한 전문가로서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 '입학사정관'은 전임사정관(채용사정관, 전환사정관, 교수사정관), 위촉사정관을 포함한다.

□ 전형 홍보

하나, 입학사정관은 입학 상담을 실시할 경우 언행의 품위와 적절성을 유지하며, 모든 고교 및 지원자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고교 방문이나 입학 상담에 대한 대가로 선물이나 금품을 수수하지 않는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입학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학생 및 교사의 개인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개인 정보를 활용할 경우 학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대학에서 입시 및 평가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을 대학 전체의 정책방향인 것처럼 언급하지 않는다.

□ 학생 선발 및 평가

하나, 입학사정관은 학생 평가에 있어 학연, 지연, 혈연 및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학생 평가 시 명확한 평가기준을 가져야 하며, 공정한 시각을 견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학생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하나, 입학사정관은 평가 시 얻은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특히 이와 관련한 윤리적·법적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

소 속 : 입학처
직 위 :
성 명 :

본인은 호서대학교 건학이념, 교육철학 및 비전에 부합하는 우수학생 선발의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모든 업무에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입학사정관 윤리 강령에 명시된 윤리 규칙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학사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그 직에 맞는 품위를 유지한다.
2. 입학사정관은 건학이념의 실현과 잠재능력이 있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한다.
3. 입학사정관은 입학전형 전문가로서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직무수행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4. 입학사정관은 대입전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입학사정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5. 입학사정관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나 대학의 기밀 사항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하여 영리 또는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6. 입학사정관은 모든 지원자가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종교, 경제적 지위 또는 사회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지원자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7. 입학사정관은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렴해야 하며, 학생선발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입학사정관으로서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경제적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8. 입학사정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에 따라 퇴직한 날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으며,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호서대학교 입학사정관 _____ (서 명)

호 서 대 학 교 총 장 귀 하